



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1.02.19.

개정 2024.04.25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목적

본 규정은 주식회사 야놀자(이하 "회사"라 한다) 정관 제42조의 2에 근거하여 이사회 내에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적용범위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정의

본 규정에서 "관계회사"란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20%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20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기업 또는 회사가 이사회 구성 등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의미한다.

제 4 조 직무와 권한

위원회는 제11조의 부의사항을 심의 또는 심의·의결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5 조 위 원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부터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만료·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, 3개월 이내 위원회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한다. 다만, 신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,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한다.
- ⑤ 결원으로 총원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

제 6 조 위 원 장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운 영

제 7 조 종 류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반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8 조 소집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, 그 3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소집일시, 장소, 부의 안건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우편, 모사전송(FAX), 전화, 문자 또는 구두 등의 방식으로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
- ④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9 조 의안제출

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일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결의방법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11 조 부의사항

- ① 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전 승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.
 1. 관계회사에 자금대여 또는 담보제공, 투자하는 반기 총 한도액
 2. 관계회사와 체결하는 상품·용역 거래계약의 반기 총 한도액

3. 관계회사와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 2% 이상 금액으로 체결하는 상품·용역 단일 거래계약
 4. 제1호, 제2호에서 사전 승인 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반기 내 집행하려는 거래
 5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전 심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
1. 상법 제397조의 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,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따라 이사회 승인 사항이 되는 거래
 2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위원회에 사후 보고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.
1. 관계회사와 체결한 상품·용역 거래계약의 반기 현황
 2. 관계회사에 자금대여 또는 담보제공, 투자한 반기 현황
 3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1 2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4 장 기 타

제 1 3 조 의사록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

제 1 4 조 보고

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의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 5 조 간사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 6 조 규정의 개폐

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

부 칙

본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